

온(On) 국민 공부방 (2020.7.8)

후세대에 부담 떠넘기는 연금제도 어떻게 해야 하나? :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중심으로



윤 석 명



1. 공적연금 현황

- 그동안의 논의과정과 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중심으로 -

급여승률 (1년 재직기간 당 보장되는 연금 지급율)

- 흔히 사용되는 소득대체율은 가입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실제 내용을 상당히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음.
- 소득대체율 개념을 사용하여 공무원연금 62.7%, 국민연금 46.5%(2028년 40%)로 흔히 비교되고 있음.
- 이같은 비교는 정확하고 공정한 비교가 아님. 공무원연금은 33년 가입기준이고 국민연금은 40년 가입기준임. 공정한 비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입기간을 통일시켜야 함.
 - ※ 40년으로 가입기간을 통일하면, 공무원연금 76%, 국민연금 40%(2028년)
 - ※ 33년으로 가입기간을 통일하면, 공무원연금 62.7%, 국민연금 33%(2028년)

흔히 사용되는 **소득대체율**과 **급여승률** 개념에서 주목해야 할 차이점(계속)

- 일본, 독일 등처럼 일반 국민 대상 연금제도가 완전소득비례연금이고 연금 적용소득 상한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실제 **소득대체율**은, 이론적인 **소득대체율**보다 훨씬 큰 차이가 존재함.

- ※ 공무원연금 적용소득 상한(2014년 월 805만원), 국민연금 적용소득 상한(2014년 월 408만원)
- ※ 공무원의 경우 **월소득이** 810만원이라면, 805만원까지 자기 소득 100%를 적용하여 연금급여를 산정함.
- ※ 국민연금의 경우 **월소득이** 810만원이라면, 408만원까지 소득에 대해서만 자기가 받을 연금 **급여율**(연간 급여승률 1.0)의 50%만 적용. 급여승률 1.0의 나머지 50%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인 월 200만원을 적용. 이에 따라 통상 언급되는 **급여승률**과 **소득대체율** 개념으로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실제 연금급여액 차이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음.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는 2조 2000억원 이다. 그 적자는 고스란히 나랏돈으로 메워야 한다. 공무원연금과 '용돈연금' 수준인 국민연금 간 격차도 6배 이상이다. 저출산·고령화 시대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복지 증가의 파고를 넘으려면 재정을 압박하는 공무원연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울신문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끈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등 전문가 3명과 함께 공무원연금의 문제점과 향후 해법 등을 모색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꼭 해야 할 과제”라며 “국민을 설득하는 정치인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생아 수 줄어 연금 제도 유지하기 나쁜 나라로

윤석명(이하 윤) 연금 분야의 저명한 사회정치학자인 스위스 로잔대의 보놀리 교수가 지난해 방한했는데 **‘(한국처럼) 인구구조가 나쁜 나라는 처음 봤다’**고 하더라. 연금제도를 유지하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여건이 좋지 않은 나라로** 들어섰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근면(이하 이) 출생아 수가 한 해 40만명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20년 후에는 사회에 진출하는 사람이 40만명 이하가 될 것이다. 이런 초저출산 국가에서 20년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나. 연금은 견고한 경제성장률, 충분한 세금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다.

윤 2015년 굉장히 어렵게 개혁한 공무원연금이 더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시간이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전문가 대담 (계속)

● 평균 급여 530만원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

김태일(이하 김) 공무원연금은 급여를 적게 주는 대신 노후를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설계됐다. 박봉과 이권을 신경 쓰지 않고 충실히 일하면 노후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 국민은 부당한 특혜라고 본다. 공무원들이 가뜰이나 잘 누리고 직업도 안정됐다고 본다.**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현재의 공무원연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 개혁해야 한다.


윤 공무원연금은 1960년 원래 소득대체율 40%로 도입됐고 연금 수급연령은 60세였다. 그런데 1962년에 수급연령 기준을 없애고 소득대체율도 76%까지 올렸다. 완전 역주행을 했다. 그때는 공무원들이 재직 기간에 희생한 것을 나중에 주겠다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공무원 평균 급여가 530만원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 그런데도 올렸던 것을 내리지 않았고, 개혁했다는 내용은 새로 들어온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공무원들에게는 개혁 내용이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

김 **100% 동의한다.**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기존 공무원은 손해 본 것이 별로 없다. 인사혁신처가 2015년 연금 개혁으로 공무원은 국민보다 내는 돈은 2배 많으나 받는 돈은 1.7배라고 해명했는데 궤변이다. 내는 만큼만 받는 구조라면 그 말이 맞다. 하지만 내는 것만큼 받는 게 아니다. 국민연금은 1을 내면 2를 받는 구조이고, **공무원연금은 1을 내고 3.4를 받는 구조다.**

윤 **맞다.** 주요 선진국들은 연금 관련 정보를 매우 투명하게 공개하는데 우리는 갈수록 비밀주의로 흐르고 있다. **문제를 제기하면 이상한 논리로 방어하기에만 바쁘다.** 이 문제가 나중에 풀아 터지면 수습할 방법이 없다. 개혁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우리 사회가 빨리 공유하고, 사회 공동의 가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주체가 나와야 한다.

윤 **우리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들이 모여 사회적 대화를 하고 있는데,** 좀더 객관적이고 이익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모여 치열한 논쟁을 거쳐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언제부터인가 이익집단들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논의가 흐르고 있다.** 우리 사회가 연금 문제를 정치 문제화하고 있다. 개혁안을 만들 때는 정치 밖에서 하고, 그 안을 논의할 때는 정치 안에서 해야 한다.

[시간이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전문가 대담에 대한 정부 해명 자료

 인사혁신처 국민 체감 적극행정	<h1>보도 해명자료</h1>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작성부서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연금복지과	담당	과 장 이찬희(044-201-8410) 서기관 홍원기(044-201-8408)
보도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그간 수 차례의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의 부담은 늘리고, 받는 연금액은 줄였습니다.

- 2015년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은 국민보다 내는 돈은 2배 많으나 (개인 기여율: 공무원 9%/국민 4.5%), 받는 돈은 1.7배(지급률 공무원 1.7%/국민 1%)입니다.

2020.1.16.(목) 서울신문 보도(1면, 4면)에 대하여 해명합니다.


<언론 보도내용>

- “공무원연금 보험료와 노후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급을 처음에는 각종 수당을 뺀 보수월액에서 나중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꿨다. 산정기준이 되는 월급 베이스를 올려 결과적으로 연금이 54%까지 늘어날 수 있게 됐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인해 연금은 감소하였습니다.
 - 종전에 퇴직 전 3년 평균보수로 연금지급 기준*을 적용하던 것을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으로 변경하면서 실제 소득을 반영한 기준소득월액(각종 수당 포함)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 * 최종 보수(~'00) → 퇴직 전 3년 평균보수(~'09) → 전 재직기간 평균 소득('10~)
 - 이외, 지급률을 인하*하는 등의 개혁 조치를 통해 연금액을 지속 삭감해 오고 있습니다.
 - * (~'09) 2.5%(20년 초과시 2.0%) → ('10~'15) 1.9% → ('16~) 단계적 1.7%로 인하

[시간이 없다 공무원연금 개혁] 전문가 대담에 대한 **정부 해명 자료** (계속)

 인사혁신처 국민 제감 적극행정	<h1>보도 설명자료</h1>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정부
보도일시	즉시 보도 부탁드립니다.		

연금총당부채는 전액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 아닙니다.

2020.1.17.(금) 서울신문 보도(9면)에 대하여 밝힙니다.

<언론 보도 내용>

- “지난해 국가부채는 1,700조 원이다. 이 가운데 공무원연금에 쏟아 부어야 할 나랏돈, 즉 연금총당부채가 약 754조 여 원에 이른다. 전체 국가부채의 약 45%다.”

<인사혁신처 입장>

- 연금충당부채는 국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확정된 빚**과 다르며,
 - 국가 간 부채규모 비교 시에도 연금충당부채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연금충당부채란 매달 재직자들이 내는 **기여금** 등 수입액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 계산한 것으로,
 - 공무원 재직자들이 일한 부분에 대해 지급해야 할 연금과,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들의 연금 지급에 앞으로 얼마나 지출이 발생할지 향후 70년 이상의 장기간에 대해 추정한 것입니다.
- 실제로 연금충당부채는 앞으로 매달 공무원들이 내는 **기여금**과 이에 상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하는 **부담금** 등으로 재원이 충당됩니다.
 - 따라서, 연금충당부채를 **전액** 국민 세금으로 부담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공청회 회의록 (제331회 국회, 임시회)

공무원연금법 개정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 개최 계획(안)

2008. 12.

행정안전위원회

2. 진술인 선정계획(안)

	성명	약력	비고		
			찬성	중도	반대
전문가 · 학계	문형표	·現 KDI 재정사회개발연구부 선임연구위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사회복지행정관 ·펜실베이니아대 경제학 박사			○
	윤석명	·現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現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 Consultant ·텍사스 주립대(A&M) 경제학 박사			○
	권혁주	·現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교수 ·옥스퍼드대 정치학(사회정책) 박사 ·서울대 정치학 학사 및 석사	○		
시민단체	이태수	·現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現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 ·연세대 경제학 박사	○		
	김진수	·現 경실연 사회복지위원 ·現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노조	박성균	·現 올바른 공무원연금법 개혁 공동투쟁본부 대표 ·現 전국교직원노조 사무처장	○		

I. 목적

공무원연금법의 개정과 관련하여 연금개혁의 올바른 방향 및 효과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각계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향후 법안 심사에 참고하고자 함.

II. 개요

- 일시 : 2008년 12월 11일 14:00
- 장소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본관 445호실)
- 참석 : 행안위 소속 국회의원, 관련 전문가 6명
- 주최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II. 진술인 선정

1. 진술인 선정원칙

- 정부안에 대한 반대그룹 전문가의 선정
- 각계 대표 및 이해당사자의 포괄적으로 선정
- 정부안 찬반 가부 동수 선정

2008년 공무원연금 개편에 관한 국회 공청회 진술인 관련

2008년 12월 11일 14:00부터 진행된 공무원법 개정 관련 공청회의
진술인 5명(전문가와 학계 3인, 시민단체 1인, 노조 1인) 중

전문가·학계의 KDI 문형표 선임연구위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사회보험연구실장,
시민단체의 연세대 김진수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가 마련한 공무원연금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진 진술인이었음.**

반면에 전문가·학계의 서울대 권혁주 행정학과 교수, 노조의 박석균 전국교직원노조 사무처장은
공무원연금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의 진술인이었음.**

공청회 진술인으로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공청회에 수록된 자료집을 통해 공무원연금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음.

여기서 주목해야 할 대목은 정부정책을 지원해야 할 국책연구원에 소속된 두 진술인이
당시 정부가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모두 반대하는 진술을 하였다는 것임.

일 시 2015년2월26일(목)

장 소 제3회의장(245호)

의사일정

- 1. 2009년 공무원 연금개혁 평가에 관한 공청회

심사된 안건

- 1. 2009년 공무원 연금개혁 평가에 관한 공청회

1. 2009년 공무원 연금개혁 평가에 관한 공청회
(14시06분)

○위원장 주호영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무원 연금개혁 평가에 관한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를 성함의 가나다순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발표자로 배준호 한신대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공청회 회의록 (제331회 국회, 임시회)

○진술인 **윤석명**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청회에서 제가 이렇게 10분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 준비를 한 30쪽가량 이렇게 했는데요. 10분 동안에 이것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오늘 이 자료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2015년 2월 26일 2시부터 어떤 논의를 했는지 역사적으로 남겨 주고 싶다는 취지에서 자세하게 적었고요.

저는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가 굉장히 저한테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게, 6년이 조금 더 지났습니다. 2008년 12월 11일 날 지금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당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그 자리에서 공청회를 하면서 그때는 NATV에서 생방송을 했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때 공청회 한 공무원연금법이 거의 손 안 대고 거의 그대로 2009년 12월 달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점만 1년 정도 차이가 있지 내용은 거의 똑같다는 그런 면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공청회 회의록 (제331회 국회, 임시회)

제가 준비한 자료집 중에서 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3쪽을 보시기 전에 31쪽을 보면, 부록 2의 2008년 공청회 안내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 드렸던 이 자료, 제가 그동안 혹시나 이런 날이 올까 해서 간직하고 있었는데 첨부를 했거든요. 그때 생방송되는 NATV에서 제가 어떤 말 씀을 드렸느냐 하면 2008년, 많이 아실 겁니다. 그 당시 글로벌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그 많은 이 코노미스트들이 왜 경제위기 터지는 것도 하나 사전에 경고를 못 했느냐 그러면서 경제학자들 책임져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데서도요.

그래서 제가 2008년 12월 달 공청회 할 때 모 두 발언 한 게, 제가 국책연구원에서 정부 입장을 지지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 안을 봤을 때는 5 년도 안 돼서 파탄이 날 제도인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내용이 33쪽에 있습니다.

‘진술인 선정계획’ 해서 저 앞에 있는 게 문형 표……

○위원장 주호영 윤 위원님, 저희들 자료 맞습니까? 33페이지 맞아요?

○진술인 윤석명 예.

○위원장 주호영 진술인 선정계획(안) 맞습니까?

○진술인 윤석명 예, 맞습니다.

이건 지금이 아니라 2008년입니다. 문형표 박사님, 지금은 보건복지부장관님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둘 다 국책연구원 사람입니다. 그런데 2009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공청회 회의록 (제331회 국회, 임시회)

년 공무원연금법하고 똑같은 건데 반대 입장으로 공청회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한데 16쪽을 봐 주시면 각주 2에 제가 달아 놨습니다.

왜 정부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될 정부……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원들 두 사람이 똑같이 정부안에 대해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공청회 자리에서 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관련 내용들은 상세히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범위의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자료에 입각해서 전부 수록을 해 놨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게 2009년 연금개혁은 할 만큼 했다, 굉장히 잘했다 그러는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중요한 배경은 굉장히 잘못된 개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호영 위원장, 강기정 간사와 사회교대)

그리고 지금 와서도 언론이나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자꾸 비교하는 대상은 거의 알려지지 않은 제2기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전반기 안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합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제가 이 공청회 내용에 포함을 시켰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 하면 2009년 개혁으로, 급여승률이라고 그러지요. 1년 공무원 재직기간에 대해서 연금을 지급하는 지급률인데 2009년 개혁 전에는 1년당 2.1이었습니다. 2009년 개혁하면서 그게 1.9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할 만큼 했다는 게 많은 이해관계자 분들의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16쪽 3번에 동그라미 친 1번이 있습니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공청회 회의록 (제331회 국회, 임시회)

2차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전반기 안에서 대다수 전문가들이 합의했던 내용은 급여승률이 1.435로 떨어져야 된다, 이걸 뭐냐 하면 처음에는 1.7이니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국민연금제도가 60%에서 2028년까지 40%로 떨어지는 걸 고려를 안 했기 때문에 1.7이 1기 위원회에서 나왔는데 국민연금은 그 사이에 이미 60% 급여율이, 소득대체율이 40%로 2028년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린 급여승률은

1로 떨어지도록 돼 있었습시다.

그러니까 이걸 맞춰야 될 거 아니냐, 지금 위원회에서 논의하는데, 그래서 탄생한 게 제2기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들이 거의 와서 논의했던 내용이 제2기 발전위원회 전반기 건의안이었는데 그 건의안에 따르면 급여율이 1.435%라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민간 부문하고 공무원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급여승률을 0.3%p 더 덧붙여야 된다, 그러면 1.75% 정도가 적정할 거다, 이게 전문가들 위주로 구성된 제1기·2기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전반기에서 건의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제2기 발전위원회 후반기 위원회는 공무원 이해관계자 분들이 과반수가 되면서 이 안을 못 받아들일 것이라고 원점에서 논의하자 그러면서 이 내용은 역사적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공청회 회의록 (제331회 국회, 임시회)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마지막에 2008년 9월 중순쯤에 캐피탈호텔에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009년 개혁안에 대해서 최종 위원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문형표 박사님, 그다음에 서원석 행정연구원 박사님 세 사람이 우리는 이 자료를 꼭 역사적으로 남겨 줘야 되겠다, 그래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2009년 개혁된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는 하겠지만 그 동의를 하는 전제조건은 우리가 논의했던 내용들이 역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2008년·2009년 개혁안 자료집 부록에 수록돼야 된다는 전제조건을 달았습니다.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정회를 했다가 그걸 받아들여서 저희가 그 조건하에서 합의를 한 건데 그 약속이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그 내용을 주로 수록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할 만큼 한 개혁이라는 2009년 개혁안에 대해서 저희는 굉장히 미진하다, 일단 급여승률 차원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연금 가입자들이 107만 명인데 2009년 개혁할 당시 위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누구도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재직자 56%가 연금액이 하나도 안 깎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계속 홍보된 자료는, 20쪽을 한번 보시지요.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공청회 회의록 (제331회 국회, 임시회)

4.2에 정부가 그동안 많이 홍보를 하고 할 만큼 했다 그러는데, 괄호 안의 박스에 있는 게 '20년 재직자는 연금을 6% 적게 받는다. 10년 재직자는 연금을 8% 적게 받는다' 이렇게 홍보를 해 갖고 모든 사람이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107만 명의 공무원연금 가입자 중에서 연금액이 하나도 안 깎인 사람들이 56%입니다. 절반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 가려진 게 2009년 개혁이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내용은 공무원연금법에 명시적으로 표현을 해야 될 텐데 이런 내용을 극히 일부만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갖고 실무자만 알고서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식의 개혁이 있을 수가 있었느냐 그런 관점에서 저는 2009년 개혁은 절차상도 그렇고 내용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가 많은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21쪽에 보면 이행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이행률도 지금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동되고 있지만 여당, 새누리당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김현숙 의원님도 23쪽에 보면 2015년 1월 22일 회의록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이 내용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하면서 기본 팩트, 사실이 되는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논의를 하는 게 얼마나 사상누각 위에서 잘못된 정보를 갖고 논의를 해 왔느냐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 논의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3. 국민연금 관련 주요 이슈

적정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 논쟁 (김연명 vs 윤석명)

뉴스 > 오피니언 > 사설/칼럼

[동아쟁론]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동아일보 입력 2015-04-17 03:00 수정 2015-04-17 09:27

贊 국민연금은 '용돈'은 되지만 생활비가 되기에는 턱없이 낮다. 명목상으로는 연금액이 본인 평균소득의 40%지만 이는 40년간의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한 것이다. 늦은 입직과 조기 퇴직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40년 보험료 납부는 불가능하다. 넉넉잡아 평균 25년 정도 가입하는데 이렇게 되면 연금액은 40%가 아니라 25%가 된다. 현재 기준으로 평생 받은 월급의 평균액이 200만 원 정도이고 25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대략 5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2015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 62만 원에도 못 미친다. 가장 평균적인 월급을 받는 사람이 평생 보험료를 내고도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연금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연금을 만든 이유는 노후에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살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최소한의 품위는 고사하고 빈곤에 허덕이지 않으면 다행인 것이다. 이것이 국민연금을 대폭 인상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이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소득대체율 43.9%, 美獨 日보다 높다 ▼

反 공적연금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두 차례 개혁으로 소득대체율이 너무 많이 깎여 노후 소득 보장이 어렵게 되었으니,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해 연금을 연금답게 만들자고 하니 듣기에 솔깃해 보이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은 주장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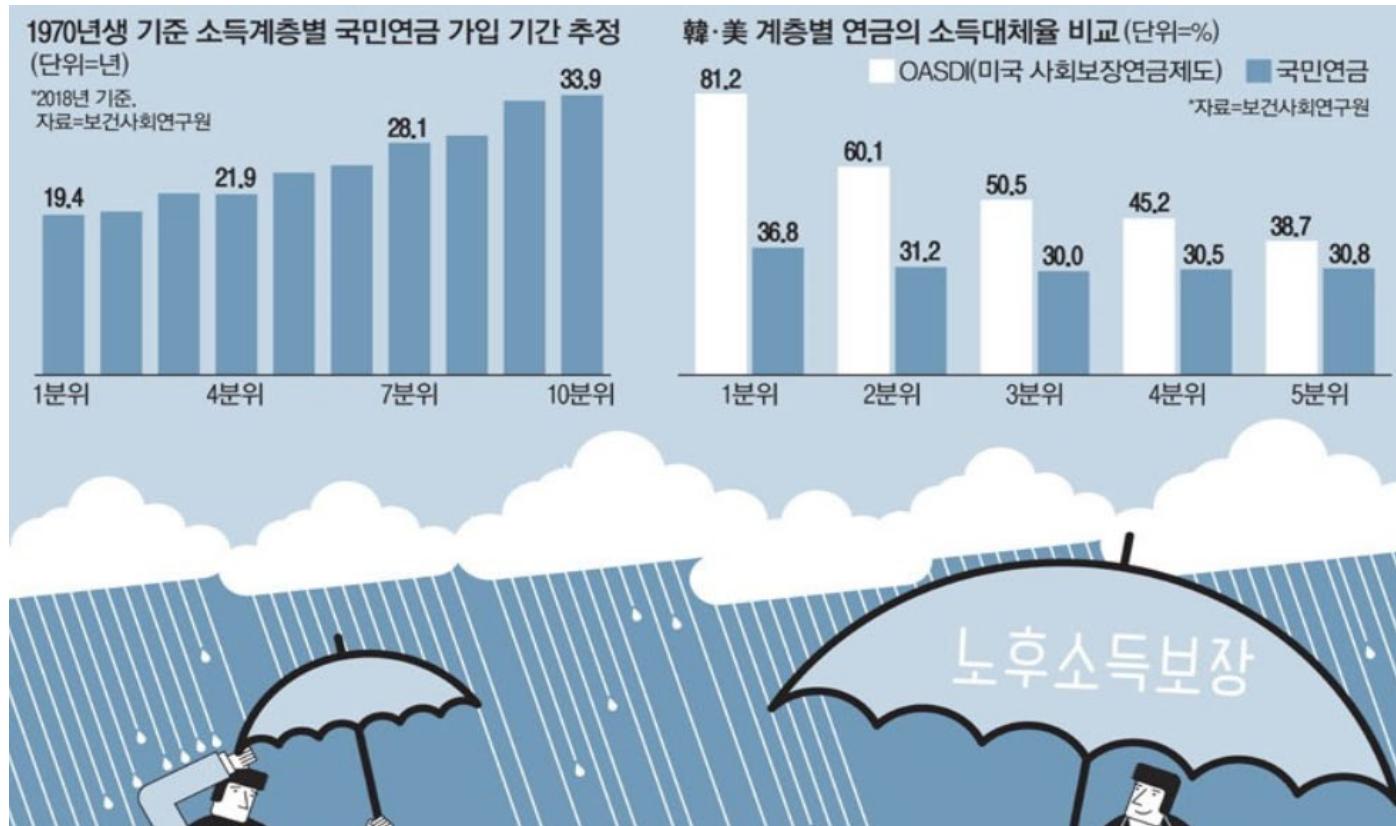
2015년 현재 우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40년 가입한 중위 소득자 기준) 적용수치는 46.5%이며 매년 0.5%포인트씩 하락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소득 대체율 인상 통한 공적연금 강화 논리의 허구

공적연금 강화 명분으로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인상하면,
고소득층에게 큰 이익인 반면, 저소득층에게는 효과가 미미함.



원자료: 윤석명 외, 매일경제 (2020. 5. 21).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필요한가?

<https://news.joins.com/article/13030110>

[출처: 중앙일보] [논쟁]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필요한가 (2013. 12.1)



2013년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13%(현재 9%)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하면서 연금보험료 인상이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를 놓고 “연금기금 소진을 막고 현 세대와 후세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기금 규모만 키우는 것은 근본적인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두 갈래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필요한가? (찬성)

<보험료 인상이 시급하다고 보는 배경>

4차(2018년) 국민연금재정계산에 따르면 2041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 70년 재정추계 시점 말인 2088년까지 누적 적자가 1경 7천조 원으로 예상된다.

16년 동안 1800조원 + 보험료 수입과 기금투자수익이 썰물처럼 빠져나간다.
기금이 소진될 경우, 보험료(또는 세금)로 30% 수준을 부담해야 한다.

특히 세대 간 형평성 관점에서도 보험료 인상이 시급하다.
상당 기간 60~7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는 베이비붐 세대는 보험료 3%로 시작한 세대다.
현재 9%를 부담하는 이들 760만 명이 이미 노동시장을 떠났거나, 조만간 노동시장을 떠난다.
보험료 인상시기가 늦어지면 이들 세대는 영원히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세대로 굳어진다.

40% 소득대체율, 즉 훨씬 연금을 적게 받을 후(後)세대는 18% 이상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세대 간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

후세대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40%인 사회에서, 고령화로 인해 급증할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도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보험료 1%p 인상도 추진하지 못하면서 후세대는 20%p(그것이 보험료이든 또는 세금이든)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어느 정도는 지속가능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나서 후세대에게 따라오라 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정도다.

빨리 대처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필요한가? (반대)

<무조건 쌓기보다 안정적 재생산 기반 만들어야>

국민연금에 대한 **대단한 착각이 한국사회에 팽배해 있다.**
국민연금기금이 고갈 위기에 처해 있고, 연금보험료를 인상해 기금 규모를 늘리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은 국민연금 재정이 아니라 더 포괄적인 사회적 지속성이다**

공적연금제도는 근로세대가 내는 연금보험료를 부모세대 노후보장에 투입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규모로 연·기금을 쌓아놓는 예외적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다.

연금기금을 무조건 많이 쌓는 것이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하는 방법은 아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다. 출산율·고용률 제고, 제도에 대한 신뢰 등 **연금제도 지속성 기반을 다지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시민들이 괜찮은 일자리를 가지고, 적정 수의 아이를 낳고 키우며,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 연금제도가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 사회적 신뢰를 쌓는 것이 제도 지속성에 더 근본적이다.

보험료 인상을 통해 연·기금에 끌어들이 사회적 자원이 있다면 한국사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확대에 투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사회의 질을 높여 공적연금 기반을 강화하지 않고 **보험료 인상에만 박차를 가하는 것은 자식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기준급여액이 무려 3분의 1 삭감된 결과 2040년에 예상되는 **연금급여 평균 소득대체율은 23% 수준**이다. 200만 원 소득자가 받을 연금액이 45만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저(低)연금 문제의 개선 없이 무조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혜택과 부담의 균형 면에서 설득력이 없다.** 국민연금의 보장기능이 취약한 가운데 **보험료 인상을 운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국민연금 지급 보장 이슈

맞짱 토론 국민연금 지급 법으로 보장해야 하나 (한국경제신문, 2013. 5. 9)

<https://blog.naver.com/k813985/150167632671>

찬성 (남윤 인순 민주통합당 의원)

'연기금 고갈' 불신 커져...法 있어야 '탈퇴 러시' 막아



반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향후 연금개혁에 '걸림돌'... 빛 되면 국가신인도 떨어져

외국에서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지급보장 사례로 언급되는 **독일의 경우가 그렇다.**

독일은 연금비용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사회법전 213조 1항)하고,
유동성이 부족할 때 연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하지만 **유동성 문제가 해결되면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사회법전 214조 1항).

국민연금을 국가가 직접 지급 보증한다고 명시한 사례는 해외에서 찾기 어렵다.

찬성 포인트

-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꼭 필요
- 독일 일본 등 국가 지급 보장 법률에 명시한 나라 적지 않아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에는 이미 명시돼
- 국가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도 국가 부채로 잡히지 않아

반대 포인트

- 입법화로 얻을 수 있는 실익 불투명
- 보험료를 인상 등 미래 국민연금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
- 국민연금이 책임지고 운용하는데 장애물 될 가능성 높아
- 미래 지급해야 할 연금이 국가부채로 잡혀 신인도 하락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연금 개혁, 타 연금과 함께 풀어야 하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11&aid=0002592440>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연금 개혁, 타 연금과 함께 풀어야 하나?

공적연금 개혁 (또는 개편) 방법을 둘러싼 논쟁 (김성주 국회의원 vs 윤석명 연구위원)

공무원연금 선 개혁 주장 (윤석명 연구위원)

- 공무원연금 개혁이 되면 유사한 방식으로 사학연금·군인연금 개혁 추진이 가능
- **국민연금을 같이 논의 할 경우 배가 산으로 갈 수 있다.**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과 함께 개혁하자는 주장 (김성주 국회의원)

-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시간을 두고 국민연금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연금 개혁, 타 연금과 함께 풀어야 하나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의 연내 마무리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수명이 크게 늘고 금리 하락으로 운용수익이 줄면서 공무원연금의 적자가 가중돼 개혁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혁 방법을 둘러싸고 여권은 공무원연금 선 개혁을, 야권은 국민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과 함께 개혁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권은 사학연금·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을 따르게 돼 쉽게 개혁되고 국민연금은 같이 할 경우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반면 야권은 국민들의 노후보장을 위해 시간을 두고 국민연금과 함께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신는다.

당정 개편안, 국민 노후보장 포기한 것 공적-사적연금 역할 함께 보며 추진해야

찬성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정부와 여당의 대대적 공무원연금 개편 공세가 시작됐다.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일사불란하게 올해 안 처리를 목표로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리는 정부재정 절감효과다. 그러나 연금을 깎고 퇴직수당을 늘려주는 방식이 절감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가면 더 큰 부담을 초래한다는 반론도 여당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내세우지만 공무원들이 다른 국민에 비해 특혜를 받고 있다는 정서에 기댄 것이지 경조사·산재·고용보험 등을 포함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비교

“중항 평준화” 주장은 시간끌기일 뿐 공무원연금 개혁 후 논의가 바람직

반대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

여당 소속 의원 전원의 명의로 발의된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연내 처리에 대한 강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있는 반면 흡사 군대의 일처리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 지적이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하나가 아닌 국민연금 등 전체 공적연금을 포함시켜 함께 논의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저성장 등 연금제도 주변 여건이 급변하다 보니 노후 소득 보장 전반을 함께 아울러서 가자는 주장이 타당성 없지는 않다.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떨어지는 국민연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은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를 통합적인

는 주장도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연금 개혁, 타 연금과 함께 풀어야 하나?

함께 풀어야 (찬성)

연금개혁의 방향에서 **노후보장은 목표이고 재정안정은 수단**이다.

- 재정고갈 위협 속에 노후보장은 뒷전으로 밀려나 본말은 항상 뒤바뀐다.
- 연금보험료를 내는 기간에 비해 연금보험금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연금재정은 위기에 처하게 된다. 그래서 연금 문제는 결국 재정 문제로 흐른다.

문제는 누가 부담할 것인가다.

- 본인이나 기업이나 정부냐,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면 결국 누가 더 많이 세금을 내야 하느냐는 문제에 부딪친다.

일반 회사와 달리 공무원 고용의 주체는 정부다.

- 정부가 공무원들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면 반발에 부딪치는 것은 당연하다.
-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는 공무원연금 개편은 과정과 내용 모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 **무엇보다 당사자 협의가 빠져 있고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 **내용에서도 현직은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가지만 신입 공무원의 경우 '덜 내고 덜 받는' 국민연금 구조로 가게 되면 하향 평준화**가 되는 것이다.

공적연금과 직역연금의 약화는 노후소득 보장을 취약하게 만들고

- **사적연금 활성화로 귀결**될 것이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연금 개혁, 타 연금과 함께 풀어야 하나?

함께 풀어야 (반대)

지금까지 다르게 발전해온 상이한 연금제도를 **동일한 기준 또는 잣대를 놓고 평가하기가 어렵다.**

- 일반 국민과 공무원의 업무상 차이, 연금제도 속성의 차이를 들어 **특수성과 형평성 문제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갈 길이 급한 공무원연금 문제를 **함께 논의해 얻을 실익이 많지 않다.**

양 제도가 **재정 상태를 포함해 처한 상황이 유사하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볼 수도 있다.**

-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적자 보전액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
국민연금은 뼈를 깎는 개혁으로 충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재정안정 달성**
-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적절성 문제를 들어,
갈 길 바쁜 공무원연금과 같이 논의하자는 것은 시간 끌기로 비칠 수 있다.

재정불안정이 심한 **공무원연금의 급한 불을 끄고 나서,**

- **전체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방향 설정을 위해 함께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